

부산광역시 용두산공원 제2023- 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시공원 ) 사용·점용허가증(안) <input type="checkbox"/> 녹 지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허가사항	명칭 및 위치	용두산공원 (부산시 중구 용두산길 37-55, 벽천폭포 앞)		
	목적 및 대상	푸드트럭 영업장(A)을 사용한 푸드트럭 영업		
	장소 및 면적	부산시 중구 용두산길 37-55 벽천폭포 앞, 토지 10m <sup>2</sup>		
	시 설 규 모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1대 주차 가능, 토지 10m <sup>2</sup> (5 X 2)		
	기 간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1년간)		
조 건		허가조건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점용을 허가합니다.				
2023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인)		

#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푸드트럭 영업장(A)을 사용한 푸드트럭 영업”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1. 사용기간은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1년간)로 하며, 푸드트럭의 인테리어 등 영업을 위한 준비기간 등은 허가기간에 포함한다.

2. 사용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며,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부산시(우리공단)에 서면으로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갱신 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갱신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3-1. 사용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경우

3-2. 쌍방 합의하에 허가자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3.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수익자가 사용수익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3-4. 허가조건 제12조의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5. 사용수익을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6. 사용료 또는 제세공과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3-7. 갱신 연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허가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하여 책정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제3조(사용료)** 1. 사용료는 연사용료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사용료는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연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한다. 다만, 연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3. 연사용료를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허가재산의 확장, 축소, 재산가액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용료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부산시(우리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부산시(우리공단)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한 날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제출 등)** 사용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용개시일 전에 그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자가 부담하고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산시(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허가, 면허 등의 영업)** 1. 사용자는 관청의 승인, 허가, 면허 등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인허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비용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장소 및 부대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점검 등 제반 사항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3. 푸드트럭 영업은 영업신고 완료 후 영업을 가능하며,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각종 인테리어, 개별 냉난방시설, 안전, 위생, 방음, 방진, 방충 등과 관련한 각종 시설을 사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미제공)
5. 사용자의 과실로 영업에 필요한 허가, 면허 등의 취소, 철회 등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가자에게 신고하고 사용허가의 취소, 업종의 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전 항의 사유로 영업을 3개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하여 공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부산시(우리공단)는 업종의 변경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7. 인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인가, 허가를 받은 후 규정 미이행 등으로 인한 제재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부산시(우리공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준수 의무)** 1. 사용자는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부산시(우리공단)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부산시(우리공단)의 관리상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4. 사용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또는 업종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30일 이내에 부산시(우리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갱신 시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에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부산시(우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 금액을 즉시 부산시(우리공단)에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부산시(우리공단)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통보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산시(우리공단)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7.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1. 허가장소 외에 상품 진열, 적치 및 광고물 설치, 게시로 인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7-2. 위 호의 지장행위로 인해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공공시설에 방해되는 행위
  - 7-3. 허가장소 내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
  - 7-4. 공원의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되거나 공원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
  - 7-5. 공원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7-6. 허가장소 내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
  - 7-7. 상품의 교환 및 환불거부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
  - 7-8. 사용허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외에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8. 사용허가기간 중 공익목적의 각종 공사 출입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 등에 대해 부산시(우리공단)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9. 사용자는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자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10. 사용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부산시(우리공단)에게 알려야 하며,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시(우리공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1-1. 주소, 상호가 변경된 경우
  - 11-2.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 11-3. 휴업 등 기타 사용자에게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사용허가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 하는 것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사용수익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허가조건 제10조 사용자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채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푸드트럭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10.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허가자가 인정하는 경우
11. 사전에 협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12. 그 밖에 재산 관리상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사용자의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우리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부산시(우리공단)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산시(우리공단)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부산시(우리공단)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변상금의 징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부산시(우리공단) 및 제3자에 손해를 가했을 때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 부산시(우리공단)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사용자는 본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항상 안전사고 방지책임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에 관하여 각종사고 및 문제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론 인적·물적 피해도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자는 본 허가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2조(기타 법규의 준수)**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와 관련한 타 법령 저촉사항은 그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특약사항)** 1. 최초 허가기간 만료시 허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로 갱신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허가기간을 포함한 허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허가재산 명도기일까지 부산시(우리공단)에게 허가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3. 푸드트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타 푸드트럭과 동일한 업종, 판매품목일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문구의 해석 등)** 1.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관련법령 등 유권해석에 따른다.  
3. 이 사용허가와 관련한 법적 분쟁 관할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허가조건의 숙지의무)** 본 허가조건의 미숙지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을 부산시(우리공단)에 전가할 수 없다.

**이 사용허가 재산은 부산광역시의 공유재산으로 사용자는 부산시(우리공단)에게 매각, 연고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용두산공원 제2023- 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시공원 ) 사용·점용허가증(안) <input type="checkbox"/> 녹 지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허가사항	명칭 및 위치	용두산공원 (부산시 중구 용두산길 37-55, 벽천폭포 앞)		
	목적 및 대상	푸드트럭 영업장(B)을 사용한 푸드트럭 영업		
	장소 및 면적	부산시 중구 용두산길 37-55 벽천폭포 앞, 토지 10m <sup>2</sup>		
	시 설 규 모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1대 주차 가능, 토지 10m <sup>2</sup> (5 X 2)		
	기 간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1년간)		
조 건		허가조건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점용을 허가합니다.  2023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인)				

#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푸드트럭 영업장(B)을 사용한 푸드트럭 영업”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1. 사용기간은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1년간)로 하며, 푸드트럭의 인테리어 등 영업을 위한 준비기간 등은 허가기간에 포함한다.  
2. 사용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며,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부산시(우리공단)에 서면으로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갱신 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갱신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3-1. 사용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경우  
3-2. 쌍방 합의하에 허가자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3.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수익자가 사용수익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3-4. 허가조건 제12조의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5. 사용수익을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6. 사용료 또는 제세공과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3-7. 갱신 연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허가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하여 책정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제3조(사용료)** 1. 사용료는 연사용료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사용료는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연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한다. 다만, 연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3. 연사용료를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허가재산의 확장, 축소, 재산가액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용료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부산시(우리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부산시(우리공단)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한 날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제출 등)** 사용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용개시일 전에 그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자가 부담하고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산시(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허가, 면허 등의 영업)** 1. 사용자는 관청의 승인, 허가, 면허 등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인허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비용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장소 및 부대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점검 등 제반 사항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3. 푸드트럭 영업은 영업신고 완료 후 영업을 가능하며,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각종 인테리어, 개별 냉난방시설, 안전, 위생, 방음, 방진, 방충 등과 관련한 각종 시설을 사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미제공)
5. 사용자의 과실로 영업에 필요한 허가, 면허 등의 취소, 철회 등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가자에게 신고하고 사용허가의 취소, 업종의 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전 항의 사유로 영업을 3개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하여 공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부산시(우리공단)는 업종의 변경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7. 인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인가, 허가를 받은 후 규정 미이행 등으로 인한 제재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부산시(우리공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준수 의무)** 1. 사용자는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부산시(우리공단)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부산시(우리공단)의 관리상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4. 사용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또는 업종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30일 이내에 부산시(우리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갱신 시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에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부산시(우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 금액을 즉시 부산시(우리공단)에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부산시(우리공단)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통보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산시(우리공단)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7.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1. 허가장소 외에 상품 진열, 적치 및 광고물 설치, 게시로 인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7-2. 위 호의 지장행위로 인해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공공시설에 방해되는 행위
  - 7-3. 허가장소 내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
  - 7-4. 공원의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되거나 공원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
  - 7-5. 공원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7-6. 허가장소 내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
  - 7-7. 상품의 교환 및 환불거부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
  - 7-8. 사용허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외에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8. 사용허가기간 중 공익목적의 각종 공사 출입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 등에 대해 부산시(우리공단)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9. 사용자는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자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10. 사용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부산시(우리공단)에게 알려야 하며,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시(우리공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1-1. 주소, 상호가 변경된 경우
  - 11-2.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 11-3. 휴업 등 기타 사용자에게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사용허가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 하는 것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사용수익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허가조건 제10조 사용자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채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푸드트럭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10.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허가자가 인정하는 경우
11. 사전에 협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12. 그 밖에 재산 관리상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사용자의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우리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부산시(우리공단)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산시(우리공단)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부산시(우리공단)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변상금의 징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부산시(우리공단) 및 제3자에 손해를 가했을 때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 부산시(우리공단)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사용자는 본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항상 안전사고 방지책임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에 관하여 각종사고 및 문제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론 인적·물적 피해도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자는 본 허가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2조(기타 법규의 준수)**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와 관련한 타 법령 저촉사항은 그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특약사항)** 1. 최초 허가기간 만료시 허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로 갱신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허가기간을 포함한 허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허가재산 명도기일까지 부산시(우리공단)에게 허가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3. 영업과 관련하여 타 푸드트럭과 동일한 품목일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문구의 해석 등)** 1.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관련법령 등 유권해석에 따른다.  
3. 이 사용허가와 관련한 법적 분쟁 관할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허가조건의 숙지의무)** 본 허가조건의 미숙지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을 부산시(우리공단)에 전가할 수 없다.

**이 사용허가 재산은 부산광역시의 공유재산으로 사용자는 부산시(우리공단)에게 매각, 연고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